

행동 수칙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

뉴욕시 교육청(DOE)은 학생들이 높은 학업 기준을 충족하고, 교사들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평화로운 환경을 학교가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원적 학교는 상호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뉴욕주 법은 교육청이 비상 상황 관리와 위기 개입을 다루는 학군 차원 안전 계획과 학생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행동 수칙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각 학교는 방문자 관리, 학생 대피 및 기타 학교에 특정된 비상 절차를 포함한 건물 안전 절차를 규정하는 건물 단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행동 수칙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은 아래에 명시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학군 차원 안전 팀의 의견과 권고 사항을 반영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교육청 행동 수칙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교육감 규정 및 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기타 정책 문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 학군 차원 학교 안전 계획:

본 계획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청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 계획에는 폭력 행위 또는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학부모 연락과 통지, 그리고 법 집행 기관 연락과 통지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 계획은 잠재적 폭력 행동을 탐지하기 위한 전략, 중재 및 예방 전략, 학생 사이 및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의사 소통 개선을 위한 전략, 학교 안전 요원의 역할과 책임, 학교 안전 요원의 교육, 학교 건물 안전 및 보안 장치, 비상 사태 대응 절차, 비상 사태 대응 절차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안전 교육, 이러한 절차와 계획의 다른 구성 요소를 시험해 볼 훈련 및 기타 연습 활동을 다룹니다.

교육청은 최고 비상 담당관 및 최고 비상 담당관의 부재 대비 부 최고 담당관을 고용합니다. 최고 비상 담당관은 교직원,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응급 대원 사이의 의사 소통, 연례 검토 및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의 갱신, 학군 차원 안전 계획과 일치하는 내용의 비상 사태 대응 계획을 포함하는 학교 안전 계획 작성, 건물 단위의 보안 및 테크놀로지,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안전, 보안 및 비상 사태 교육, 비상 사태 대응 훈련을 조율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군 차원 안전 계획은 학군 차원 안전 팀과 최고 비상 담당관에 의해 매년 검토됩니다. 최고 비상 담당관은 Mark Rampersant 입니다. 그가 부재할 경우, 이 역할은 Jay Findling 이 수행할 것입니다.

a) 학군 차원 안전 팀:

학군 차원 팀은 다양한 기관과 교육청 부서의 대표들을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정책 패널(PEP)
- 전미 교사 연맹(UFT)
- 관리직 및 행정직 위원회(CSA)
- 교육청의 가정 및 커뮤니티 지원실(FACE)

- 뉴욕시 비상 사태 관리부처(NYCEM)
- 뉴욕시 경찰청(NYPD) - 학교 안전부(SSD)
- 뉴욕시 소방청(FDNY)
- 교육청 교육감의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담당실(OSPP)
- 교육청의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
- 교육청의 학교 시설 담당부(DSF)
- 교육청의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담당실
- 학교 보건 담당실(OSH)
- 뉴욕시 보건 정신 위생청(DOHMH)

b) 종합 대응 절차(GRP):

다음의 내용은 차단(lockdowns), 대피(evacuation) 및 피신(shelter-in)을 실행하기 위해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비상 사태 대응 절차입니다. 각 절차는 각 대응에 대한 특정 교직원 및 학생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응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에서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세 가지 절차의 경우 모두 911에 반드시 전화해야 합니다. 학교장/대리인이 만약 전화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 그들은 반드시 뉴욕시 경찰청(NYPD) 및 911에 연락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명시한 교육감 규정 A-412에 따라 통화가 이루어진 것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뉴욕시 교육청과 뉴욕시 경찰청 학교 안전부 대테러 부서는 학교 내 또는 커뮤니티 주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따를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종합 대응 절차는 학교가 화재, 교내 침입자, 교내의 총격 범인 또는 학교 건물 밖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응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요약합니다.

모든 비상 사태에 성인과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단(소프트/하드)

소프트 차단은 수색팀에 알려진 임박한 위험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소프트 차단이 있을 경우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행정 팀, 건물 대응 팀 및 뉴욕시 경찰청의 학교 안전 요원(SSA)은 지정된 지시 장소에 동원됩니다.

하드 차단은 임박한 위험이 파악되고 빌딩 수색 작업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진행 중인 위협 사건에 대한 대응도 포함됩니다.

다음의 내용이 안내됩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소프트/하드 차단을 시작합니다. 적절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회 반복.)

학교 안전 요원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적절한 차단 행동을 취하고 응급 대원의 도착을 기다립니다.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교실 밖 복도에 학생이 있는지 둘러보고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끕니다.
-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하여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 응급 대원이 문을 열거나, “경계 해제”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차단이 해제되었습니다.”

안내와 구체적인 지시를 받습니다.

- 출석을 확인하고 없어진 학생의 경우 메인 오피스에 연락하여 확인합니다.

하드 차단이 있을 경우 개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 및 학생은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이용 가능한 모든 선택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도망쳐야 할 수도 있고 만약 가능한 지역에 있다면 911에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긴 문 뒤에 숨어서(차단 상태 유지) 조용히 있어야 하거나, 만약 방이나 사무실에서 긴급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라면 공격자와 맞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피

화재 경보 시스템이 교직원 및 학생을 대피시키는 최초의 경보입니다. 하지만 안내 방송 및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대피를 시작하라고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내 방송은 “주목해 주십시오”로 시작하며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안내 방송으로 2회 반복.)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한 줄로 섭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 교실 밖으로 나가기 전 학생들에게 코트를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체육복 차림인 학생들은 탈의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절한 겉옷이 없는 학생들을 최대한 빨리 따뜻한 장소로 안내합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받습니다:

- 대피 폴더(출석 기록지와 어셈블리 카드)를 지참합니다.
- 화재 대피 훈련 포스터에 명시된 대피 장소로 학생들을 안내합니다. **항상 추가 지시 사항이 있는지 경청합니다.**
- 출석을 확인하고 학생들을 파악합니다.
- 부상, 문제 상황 또는 없어진 학생이 있는지 어셈블리 카드를 이용해 학교 교직원과 응급 대원에게 보고합니다.

피신

다음의 내용이 안내됩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피신하십시오. 모든 출입구를 확보하십시오.” (안내 방송으로 2회 반복.)

학생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건물 안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 일상 업무를 계속합니다.
- 교직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교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 상황에 촉각을 세웁니다.
- 일상 업무를 계속합니다.

피신 지시는 “경계 해제”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지속됩니다: “피신이 해제되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구체적 지시를 받습니다.

건물 대응 팀 멤버, 층별 관리담당자, 피신 담당 교직원은 모든 출구가 잠겼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장소로 갑니다. 해당 교직원과 그들의 구체적인 책임은 각 건물 안전 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치 유지

위치 유지는 학교 건물 내 상황이 발생하고,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계 해제"가 발표될 때까지 교직원, 학생, 방문객이 현재 위치에 머무르면서 일상 업무를 계속해야 할 때 발동됩니다.

위치 유지는 학교 커뮤니티를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는 건물 내 사건을 관리할 때, 또는 응급 대원이 지시할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위치 유지는 소프트 또는 하드 차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치 유지 안내 방송을 들었을 때:

교직원은 반드시:

- 문을 잠급니다.
- 현재 위치에 머무릅니다.
- 위치 유지가 발표되었을 때 교실 밖에 있는 학생이 있다면 메인 오피스에 연락하여 알립니다.

학생/교직원은 반드시:

- "경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현재 위치에 머무릅니다.
- 일반적으로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를 무시합니다.
- 교실 패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치 유지가 해제될 때까지 반드시 현재 위치에 머물러야 합니다.

c) 위협 및 범죄 행위에 대한 대응

학교 관계자들은 물리적 상해에서 폭파 위협까지 학생, 학교 교직원 및 방문자에 의한 협박 또는 범죄 행위에 대응할 준비가 반드시 되어있어야 합니다. 학교 관련 사건, 학생이나 학교 직원에 의한 범죄 또는 의료적 응급사태 관련 법 집행 담당자들에게 통지하는 절차는 교육감 규정 A-412(아래 주요 문서 참조) 및 위협 대응 절차를 포함한 기타 정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종합 대응 절차(GRP)는 모든 위협과 폭력 행위에 대응하고, 학군 교직원 및 911 응급 대원의 즉각적인 대응에 사용될 것입니다. 도착 즉시, 사건에 특정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 및 학교 안전 요원은 모든 학군 및 비상사태 대응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는 또한 학생들의 스스로를 향한 위협에 대응할 준비도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위기대응 팀을 구성하고 자살 시도, 자살 행동 및 자살 충동을 다루기 위한 절차는 교육감 규정 A-755 및 정책에 나와 있습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학생이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심각한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학교 관계자들은 행동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과 중재를 사용하고 학교 위기 완화 계획에서 확인된 교내 및 커뮤니티 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해당 행동을 완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 고려사항이 허락된다면 학부모에게 학생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다. 상황이 안전하게 해결될 수 없다면, 학교장/대리인은 교육감 규정 A-411 에 따라 반드시 911 에 전화하여야 합니다.

d) 학교 안전 요원:

1998 년 9 월 교육청, 교육감 및 뉴욕시는 교육청과 뉴욕시 경찰청의 합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안전 요원의 선발, 배치, 훈련, 평가 및 관리를 포함한 학교 보안 기능을 뉴욕시 경찰청이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는 이후 지속되었고 그후 2019 년 6 월 19 일에 조정되었습니다.

수정된 MOU 는 교육청 학교에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유지를 위한 학교 관리자, SSA 및 뉴욕시 경찰청의 역할을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의 위법 행위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교의 주요 역할 강조, 학교 직원들이 SSA 에 연락하여 학생들을 다루어야 하는 상황 정의, 위험 축소를 포함한 SSA 및 뉴욕시 경찰청 직원 교육 등을 제공하고, 뉴욕 경찰이 학교 관할장소에서 학생들을 심문할 수 있는 때와 방법에 대한 절차 및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와 함께 체포 또는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에 관한 기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체포 또는 소환장 발부를 대체 또는 대신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수정된 MOU 는 하단의 주요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 연수 및 훈련:

모든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2 년동안 유효한 비상사태 대비 연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수는 7 월과 8 월에 제공되며 9 월 1 일 이후 학교장 직책을 맡은 신규 학교장을 위해서는 학년도 중에 제공됩니다.

모든 교육청 직원은 잠재적 폭력 행위 조기 탐지뿐만 아니라 학교 및 관계부서 행정 건물에서 사용될 응급사태 대비 절차에 대한 연례 연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해당 연수가 9 월 15 일 전 및 신규 채용자를 위해 학년도 중 필요시에 실시되도록 연간 개학일 트레이닝 데크가 모든 학교에게 제공됩니다. 학교 건물에서 일하지 않는 교육청 직원은 9 월 15 일 이전 또는 채용 후 30 일 이내에 반드시 온라인 연수 모듈을 마쳐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비상 사태 대응 절차 및 이용 가능한 학교 자원에 대한 교육을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받아야 합니다. 종합 대응 절차(GRP)를 검토하는 수업은 반드시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모든 학생들에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학교는 파워포인트, 비디오 및 수업 계획을 포함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 대응 절차(GRP)를 포함한 학교 비상사태 절차를 다루는 정보는 각 학년도가 시작할 때 반드시 가정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안내 편지와 비상사태 절차에 대한 요약문은 가정들에 배포하기 위해 학교에 제공됩니다.

모든 학교는 비상사태 대응 훈련의 구성요소들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다음의 훈련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에는 뉴욕시 소방청이 승인한 대기실, 화재 구조 구역 또는 구조 지원 구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모든 이동성이 제한된 학생과 교직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장은 반드시 매 학년도에 최소 12 번의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이 중 8 번은 반드시 12 월 31 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8 번의 훈련에는 반드시 대피 및 차단 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2 번의 훈련 중 적어도 4 번의 차단 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중 한 번은 반드시 10 월 31 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 번은 2 월 1 일 - 3 월 14 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의 훈련은 학교의 재량대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훈련은 실제의 비상사태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 하에 점심 시간 및 예고되지 않은 시간을 포함한 다양한 시간대에 실시될 것입니다.

뉴욕시 응급 대원(뉴욕시 경찰청, 뉴욕시 소방청 및 재난 관리국)과의 협동 하에, 교육청은 대피, 피신 및 차단이 필요한 비상사태에 대응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보로에 있는 여러 학교 건물에서 다양한 훈련이 잘 시행되는지 관찰합니다. 팀은 효과성을 산정하고 시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지도자 및 다양한 기관들의 보고를 들을 것입니다.

f) 학부모 통지:

학교 내 폭력 행위의 위협 또는 실제 발생은 학교 커뮤니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폭력 위협 또는 발생 시, 학교 관계자는 반드시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연락할 준비가(상기 정해진 바와 같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체없이 학교 커뮤니티, 특히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학부모 통지(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된) 관련 교육청 정책 및 절차는 교육감 규정 및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하단 주요 문서 참고). 교육감 규정에 따라 학부모, 교직원, 선출된 공직자들은 문자 메시지, 전화 및/또는 이메일 등으로 비상사태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NotifyNYC 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리더들은 학교 내 특정 비상사태 발생 시 학부모와 학교 커뮤니티에 알릴 수 있는 학교 특별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가정, 학생 및 직원에게 안전하게 통신을 작성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송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학교는 락다운, 대피, 홀드, 셸터인과 같은 응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핸드폰 또는 컴퓨터로 가정에 실시간 알림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러한 통지서를 작성할 때 수퍼인텐던트, 현장 자문 및 홍보실의 자문을 얻어야 합니다.

2 - 건물 단위의 학교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4 에 따라(하단 주요 문서 참조), 모든 학교는 건물 단위의 학교 안전 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교 안전 계획 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각 위원회는 반드시 다음의 인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미 교사 연맹(UFT) 지부장, 건물 관리 담당/대리인, 교내 학교 안전 관리인 레벨 III/대리인, 지역 법집행 관계자, 학부모회 회장/대리인, 영양사/현장의 급식 서비스 대리인, 커뮤니티 멤버, 지역 화재 담당자, 지역 앰블런스 또는 기타 응급상황 대응 기관, 학생회 대표(적절할 경우), 그리고 기타 학교장(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한 사람. 각 학교의 안전 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학교는 명령 체계 및 건물 대응 팀, 위기대응 팀을 포함한 다양한 팀을 설립해야 하며 비상 상황에서 학교의 대응을 조정할 행정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또한 학교 건물 입장 및 방문객 관리 절차, 보안 배정 및 일정, 침입자 발생 시 절차, 적절한 법 집행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 비상사태 의사소통 체계, 없어진 학생이 있을 경우의 절차, 출입문 경보에 대한 대응 절차 및 이동성이 제한된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대피 절차 등의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계획은 건물 대응팀의 역할 및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모든 비상사태 대응 절차를 명시합니다. 각 건물 단위의 계획은 위험물질 유출, 침입자, 폭탄 위협, 인질극 또는 총격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이에에는 대피, 피신, 차단이 포함됩니다. 건물 수준의 계획은 반드시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담당실(OSPP)에 의해 개발된 안전 계획 견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매 해 갱신되어야 합니다. 교직원 및 가정과 공유할 수 있는 건물 단위의 안전 정보는 학교 안전 계획 교직원용 또는 학부모용으로 각 학교장의 요청 시 제공됩니다. 학부모 지침서 견본은 하단 주요 문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교육법에 따라, 건물 수준의 비상사태 대응 계획은 반드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3 - 교육청 중앙 대응 팀(CRT)

중앙 대응 팀(CRT)은 다양한 교육청 부서 및/또는 기관/시설 회사 밖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 교육청 부지 내에서 발생시 다양한 교육청 사무실이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 리더십에 의한 종합 비상사태 대응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 대응 팀은 또한 심각한 기상 상황 및 공공 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의 조치 등과 같은 기타 다른 상황에도 대응할 것입니다. 중앙 대응 팀은 시니어 리더십이 시기 적절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관련 교육청 직원에게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을 도모합니다. 중앙 대응 팀은 해당 상황이 학생의 건강/안전 및 학교 건물 장비/시설의 작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 활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 대응 팀은 학교 커뮤니티가 대응해야 할 위험과 조치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각 활동 후의 보고를 통해 미래 사고에 대한 대비와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중앙 대응 팀은 뉴욕시 경찰청(NYPD), 뉴욕시 소방청(FDNY), 교통국(MTA), 뉴욕시 비상사태 관리부처(NYCEM) 및 보건 정신 위생청(DOHMH)과 사회복지부(DSS)와 같은 여러 기관의 기타 비상 관리 팀을 포함하는 다른 뉴욕시 기관들과 중요한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미국 적십자(American Red Cross)와 협력할 것입니다. 교육청 안에서 중앙 대응 팀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야에서 모든 중요한 교육청 팀과 함께 노력합니다: 학교 시설들 및 해당 시설 부 디렉터(DDF), 안전 및 예방 파트너십 및 해당 보로

안전 디렉터(BSD)가 조율을 합니다. 시설 부 디렉터들과 보조 안전 디렉터들은 비상사태에 학교장과 각 학교의 건물 대응팀(BRT)의 각 리더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역할을 합니다.

4 - 계획 운영의 연속성(COOP)

교육청의 계획 운영의 연속성은 그 지역의 자연 활동, 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 기술이나 공격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상사태 상황 동안 서비스가 계속해서 수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계획은 뉴욕시 비상 사태 관리부처(NYCEM)에 의해 감독을 받으며 매년 교육청에 의해 검토됩니다.

각 부서의 COOP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를 포함한 지역에 관련한 다양한 비상사태를 다룹니다:

필수 기능: 정상적인 활동의 중단 후에 수행되는 중요한 활동과 이러한 필수 기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장비, 기술 또는 인력.

승계 순서: 해당 관계자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상사태 시 고위 기관 사무실의 임명을 위한 조항.

권한 위임: 중앙, 현장 및 모든 기타 레벨과 위치에서의 정책 결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권한과 직책에 의한 식별.

지속적 시설: 주요 시설 이외에, 특히 연속성 있게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장소. 지속적 시설, 또는 "대체 시설" 이란 단지 다른 장소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재택근무, 원격근무, 이동식 사무실 개념과 같은 전통적이지 않은 선택 사항도 의미합니다.

지속적 의사소통: 모든 조건 하에 다른 기관과 필수 기능을 함께 수행할 능력을 제공해주는 의사소통.

중요 기록 관리: 지속적인 상황에서 필수 기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전자 및 종이 문서, 참고 문서, 기록, 정보 시스템,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및 장비의 식별, 보호 그리고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

인적 자본: 지속적인 사건 동안의 비상 직원 및 배정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타 특수 분야의 직원.

실험, 연수 및 연습: 기관의 연속적 계획이 지속적인 사건 발생 기간 동안 기관의 필수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

통제 및 지시의 권리 이양: 기관의 주요 운영 직원 및 시설로부터 다른 기관 직원 및 시설로 필수 기능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이전할 수 있는 능력.

재구성: 잔존하는 기관 및/또는 대체된 기관의 직원이 원래의 또는 대체된 주요 운영 시설에서 정상적인 기관의 운영으로 재개하는 과정.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한 보건 및 안전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청은 교육청 건물을 사용하는 관리자, 직원, 학생, 학부모 및 기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특정 정책, 절차 및 자원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수정되며, 배포될 것입니다. 공공 지원 자원은 [교육청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 - 행동 수칙

행동 수칙은 학생에게 기대되어지는 표준 품행 및 비행 행동에 대한 개입, 지원, 규율의 범위를 설정하는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규율 규정), 차별,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 문제를 다루고 대응하기 위한 조항, 퇴실 및 정학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 학부모에게 (선호하는 언어로 작성된)

통지문을 제공할 정책 및 절차, 보고를 위한 필요 요건, 법 집행 기관에게 통보할 필요 요건, 직원 연수를 위한 필요 요건,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과 안전하고 지지적인 학교 분위기를 구축에 중점을 둔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포함하는 학생의 품행을 규율하는 교육청의 정책 및 절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학부모, 보호자 또는 다른 권위기관에 자주 불복종하는 18 세 이하의 학생은 관리감독이 필요한 자(Person in Need of Supervision: PINS)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관리 감독이 필요한 자(PINS)에 대한 청원을 신청하기 전에 아동 복지국(ACS) 가족 평가 프로그램(F.A.P.)을 통해 전환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평가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관리 감독이 필요한 자(PINS)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1.nyc.gov/site/acs/justice/family-assessment-program.page>). 학부모는 자발적으로 아동 복지국 현장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으며 예방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석 및/또는 학교 품행문제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자(PINS) 청원에서 제기될 경우, 아동 복지국은 학생의 출석/학교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가 취한 조치를 검토하고 학교가 추가적인 전환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도합니다. 아동 복지국은 청원서를 제출할 필요성을 없애거나, 또는 최소한 제기된 청원서의 교육 관련한 주장을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에 연락하여 무단결석 또는 학교 품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교육청 직원은 또한 중재에 대한 문서와 교육관련 문제가 관리 감독이 필요한 자(PINS) 청원서의 제출없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제공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이 필요한 자(PINS) 청원서가 제출되고 학교 교직원의 도움이 교육과 관련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가정법원 판사는 학교 교직원의 법정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 규율 규정:

규율 규정은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를 설립합니다. 이는 상담 및 회복 수단과 같은 기타 학교 차원의 중재를 통하여 학생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모든 타당한 노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징계 대응은 예방 및 효율적 중재를 강조하고, 학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학생의 교육에 지장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학교문화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령에 맞는 점진적 중재와 지원, 그리고 학생의 부적절한 품행에 대하여 대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징계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b) 중재 전략들:

모든 학교는 학생들을 사회적 및 학업적으로 모두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와 풍토를 장려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 감성을 학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행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 친화적 성격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교직원들은 학습에 방해가 되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 직원, 교사, 카운슬러 및 기타 교직원들은 학생의 품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재 및 예방 전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이러한 전략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들)과 논의해야 합니다.

중재 전략은 규율 규정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중재 및 예방적 접근 방식에는 가이드스 컨퍼런스, 학부모 아웃리치, 갈등 해결,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카운슬러 교직원의 중재, 학생 업무 담당팀에 의뢰, 회복 수단, 협동적 문제 해결, 개인/그룹 카운슬링, 개별 지원 계획, 카운슬링 서비스에 의뢰, 멘토링, 사회-정서적 학습 및 커뮤니티 기반 단체에 의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목적을 이해시키는 중재와 예방 전략의 활용을 통하여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학업적 및 사회-정서적 성장을 촉진하고 그들이 학교의 규정과 정책을 따르도록 돕습니다.

교실 안에서 교사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학업 및 행동 기법 및 접근을 사용합니다. 가이드스 카운슬러와 같은 지원 직원들이 포함된 학제통합 팀은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이 팀들은 "위험한 상태"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이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연령에 맞는 점진적 징계 대응은 교육감 규정 A-443 및 규율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단 주요 문서 참고).

c) 차별, 괴롭힘, 협박 및 집단 따돌림:

교육청의 정책은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 협박, 및/또는 집단 따돌림을 행하지 않고, 실제 또는 보여지는 인종, 피부색, 신념, 민족, 출신 국가, 시민권 유무/체류 신분,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취향, 장애 또는 체중의 이유로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및 교육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정책은 교육감 규정 A-832 와 규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단 주요 문서 참고) 이 문서들은 이러한 행동을 예방, 보고, 조사 및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합니다.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은 반드시 교육감 규정 A-832 의 요구사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은 학교가 해당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수업, 교과과정 및 자세한 시행 지침을 포함한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트레이닝 데크와 보충 자료를 개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리더는 아직 교육받지 않은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d) 학부모 참여 및 통지:

학교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 교직원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을 인지하고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자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접근이 제한되지 않는 한 위탁 가정에 있는 학생의 부모는 위탁 부모 및 기관에 더해 자녀의 품행 또는 징계 조치 관련 연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모들은 규율 규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규율 규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자녀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도울 방안으로 학교와 협력할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할 것이 장려됩니다. 안전 및 청소년 발달 담당실(OSYD)은 행정 직원, 학부모 코디네이터가 학부모에게 규율 규정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워크숍 트레이닝 데크를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교육자는 학생의 행동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교와 사회에서 지내기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사 및 교직원들과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효율적인 전략에 대해 상담할 것이 권장됩니다.

학생의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지원 및 중재를 논의하기 원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포함한 자녀의 학교 관계자에게, 또는 필요하다면 가정 및 커뮤니티 역량강화 지원실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규율 규정을 위반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학교장이나 학교장 대리인은 반드시 이 사실을 학생의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e) 교육: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포용적인 학교에서 학습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청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갈등의 실제 원인을 해결하고 교훈적인 순간을 통해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회복적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학생의 사회-정서적 기술과 웰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여 그 결과 정학이나 징벌적인 규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합니다.

교내 학생 품행은 안전하고 존중하는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학생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모든 학생들이 준수하도록 기대되는 표준 품행,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되는 지원과 중재, 그리고 품행 기준을 어겼을 때의 징벌 대응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학교들이 규율 규정,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 및 뉴욕시 교육청 허용 가능한 인터넷의 사용 및 안전 정책을 학생들과 검토하도록 시간을 반드시 배정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교육청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품행에 대해 숙지 및 이해할 수 있도록 연령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규율 규정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령에 맞는 학급 교육을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규율 규정에 관하여 최소 한 번의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상호 활동, 프로젝트 제안 및 학생간 협동 학습 경험의 기회, 그리고 학생 트레이닝 데크 워크숍을 포함하는 표준 기반의 연령에 맞는 수업 계획을 제공합니다.

학교는 반드시 2022년 10월 15일까지 모든 교직원과 함께 규율 규정을 검토하고 규율 규정의 목적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합니다. 상호 활동을 포함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전문 개발 워크숍 트레이닝 데크가 제공됩니다.

다음의 주요 문서는 교육청 행동 수칙 및 학군 차원 학교 안전 계획의 일부입니다.

주요 문서:

[교육감 규정 A-411 행동적 위기 완화/중재 및 911 연락](#)

[교육감 규정 A-412 교내 보안](#)

[교육감 규정 A-413 교내 핸드폰 및 기타 전자제품](#)

[교육감 규정 A-414 안전 계획](#)

[교육감 규정 A-415 교육청 비상사태 통지 시스템](#)

[교육감 규정 A-418 성 범죄자 통지](#)

[교육감 규정 A-420 체벌](#)

[교육감 규정 A-421 언어 폭력](#)

[교육감 규정 A-432 수색 및 압수](#)

[교육감 규정 A-443 학생 훈육 절차](#)

[교육감 규정 A-449 안전 사유로 인한 전학](#)

[교육감 규정 A-450 비자발적 전학 절차](#)

[교육감 규정 A-750 아동 폭력](#)

[교육감 규정 A-755 자살 예방/방지](#)

[교육감 규정 A-830 불법 차별/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

[교육감 규정 A-831 또래 성희롱](#)

[교육감 규정 A-832 학생 대 학생 차별적 괴롭힘, 협박, 및/또는 따돌림](#)

[모든 타인 존중 웹사이트](#)

[교육청, 뉴욕시 경찰청, 뉴욕시의 수정된 MOU](#)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 \(규율 규정 K-5\)](#)

[학생 학습 지원을 위한 뉴욕시 품행 기대치 \(규율 규정 6-12\)](#)

[학부모 권리 및 책임 장전](#)

[학교 안전 및 비상시 대응에 관한 학부모 안내서](#)

[허용가능한 인터넷 사용 및 보안 정책](#)

[12 세 이하 학생을 위한 소셜 미디어 지침](#)

[13 세 이상 학생을 위한 소셜 미디어 지침](#)

[ACS - Parent Handbook \(nyc.gov\)](#)